

서울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21나2016940 판결 [계약금반환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21나201694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합56023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진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결

담당변호사 황영규

변론종결 2021. 11. 10.

판결선고 2021. 12. 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합56023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9,582,6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10쪽 4행 “F 등”을 “C 등”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영주, 판사 김형배, 판사 김종기